

##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2. 3. 8 규칙 제1033호  
일부개정 2014. 12. 31 규칙 제109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) ① 「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, 크기,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

②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
제3조(금연구역별 경계기준)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버스정류소 :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
2. 택시승차대 :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
3.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2. 31]

제4조(금연지도원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4. 12. 31>

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4. 12. 31>

[제목개정 2014. 12. 31]

### 부칙

이 규칙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2. 31 규칙 제1094호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4. 12. 31>

###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(제2조 관련)

1.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,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.

가. 도시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표지판(예시)



- ㄱ. 규격 : 60cm(15cm)×170cm×14.6cm
- ㄴ. 전용서체 : 윤고딕
- ㄷ. 전용색상 : 바탕(초록색), 금연마크(적색) 판테 두리·지주(도토리색), 글자(흰색)
- ㄹ. 재질 및 설치방법
  - 1) 표지판 :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, 스테인 도색
  - 2) 판 테두리 : 오일스테인 처리
  - 3) 지도부분 : 투명아크릴 배면 인쇄 후볼트고정
  - 4) 지주 :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
  - 5) 스텐드형

나. 버스정류소 표지판(예시)



- ㄱ. 규 격 : 20cm×40cm
- ㄴ. 전용색상 : 바탕(연두), 글자(흰색, 적색 DIC2483)
- ㄷ. 재 질 : PVC 5mm, UV코팅, 실사출력 부착, 양면인쇄

다. 택시승차대 표지판(예시)



- ㄱ. 규 격 : 지름30cm
- ㄴ. 재 질 : PVC,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
- ㄷ. 전용서체 : 국문타이틀(서울남산체B)  
본문(나눔고딕 Bold)  
영문(헬베티카 볼트체)
- ㄹ. 전용색상 : 바탕(흰색), 테두리(C60,Y100)  
글자(회색 K85, 적색 DIC2483)

라. 학교 절대정화구역 표지판(예시)



- ㄱ. 규 격 : 지름50cm
- ㄴ. 재 질 : 포맥스(5T), 유포지(무광코팅)
- ㄷ. 전용서체 : 국문타이틀(서울남산체B)  
본문(나눔고딕 Bold)  
영문(헬베티카 볼트체)
- ㄹ. 전용색상 : 바탕(흰색), 테두리(C60,Y100)  
금연구역(Y50), 글자(회색 K85,  
적색 DIC2483)

마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표지판(예시)



- ㄱ. 규 격 : 지름50cm
- ㄴ. 재 질 : 포맥스(5T), 유포지(무광코팅)
- ㄷ. 전용서체 : 국문타이틀(서울남산체B)  
본문(나눔고딕 Bold)
- ㄹ. 전용색상 : 바탕(흰색), 테두리(C20,M60)  
글자(회색 K85, 적색 DIC2483)

2.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,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3.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4.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.
5. 표지판의 색상이 변색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14. 12. 31>

위 축 장

주소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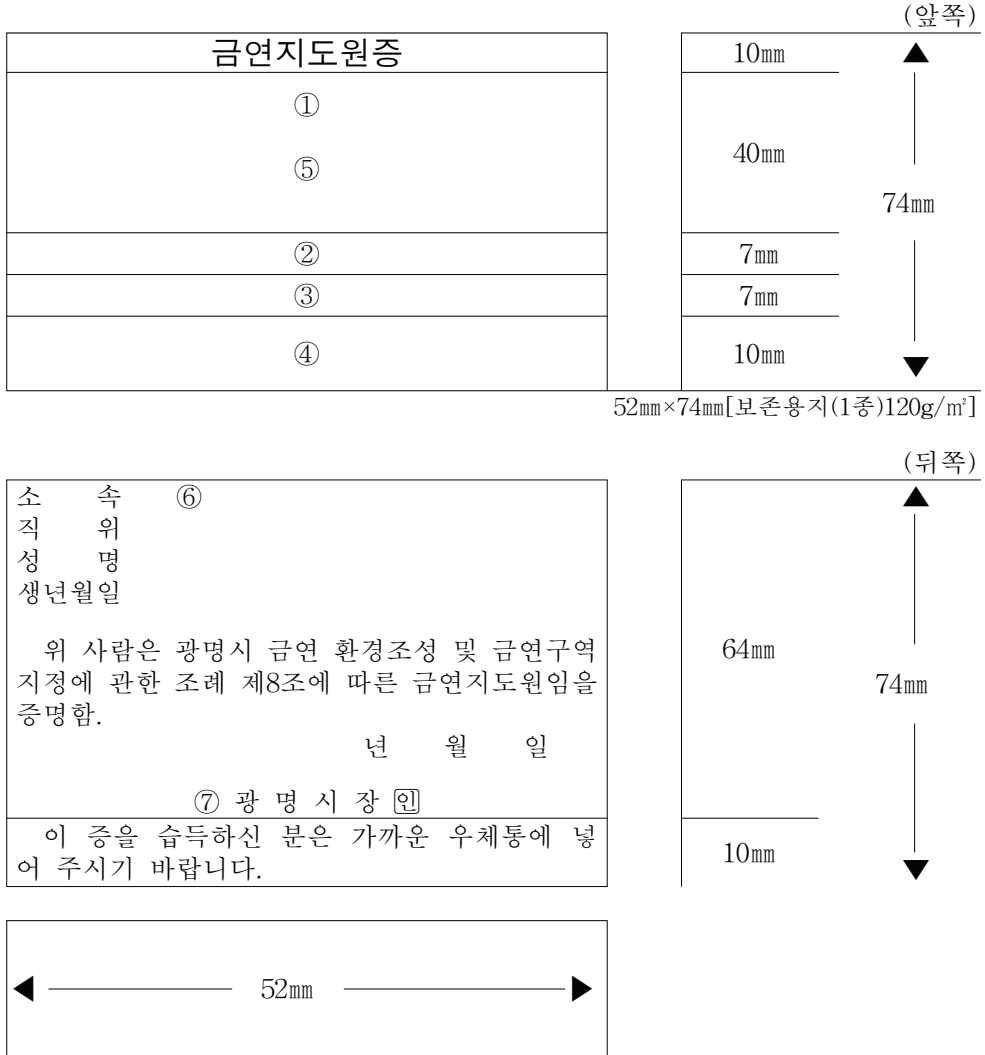
성명 :

귀하를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  
조에 의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광 명 시 장

[별표 3] <개정 2014. 12. 31>



※ 주 1) 위의 ①②③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- ① 사진(49mm×40mm)
  - ② 금연지도원증 번호
  - ③ 성 명
  - ④ 발급기관명(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)
  - ⑤ 철인
  - ⑥ 소속·직위·직급·성명·생년월일
  -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
- 2) 지질은 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
  - 3) 색상은 하늘색